

## 붙임 5.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기준

### □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요령

#### 가.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기본요율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공사손해보험 기본담보요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공사물건별 기본요율을 적용 (첨부 1)

#### 나. 공사기간에 따른 기본요율 조정

- 1) 보험계약목적물의 공사에정기간이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요율을 조정

##### ○ 조정 후 기본요율

$$\text{기본요율} \times \left\{ 1 + \left( \frac{\text{공사예정기간}}{\text{표준담보기간}} - 1 \right) \times 50\%^{(\text{주})} \right\}$$

주) 공사예정기간이 표준담보기간보다 12개월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30%를, 24개월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20%를 적용

- 2) 공사예정기간이 표준담보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표준담보기간을 적용, 즉 기본요율 적용
- 3) 하나의 건물내에 용도가 다른 시설을 시공할 경우의 기본요율은 주된 용도로 사용될 건물면적이 연면적의 70%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건물요율을 적용하고 70%미만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용도중 위험이 가장 높은 용도의 기본요율을 적용한다.
- 4) 둘 이상의 용도와 성격이 다른 건축물 또는 공사(예 : 터널, 교량을 포함한 도로공사)를 일괄 시공하는 경우 공사별 보험가입금액기준으로 해당공사요율을 적용하고, 공사별 보험가입금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요율 적용한다.(단, 주된 공사 금액이 90%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요율을 적용함)

※ 공사에정기간은 전체공사예정기간이 아닌 공사보험대상공사의 공사에정기간을 말함

다. 자기부담금에 따른 할인을 적용

- 1) 우리청 집행공사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 및 제3자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건당 각각 1억원으로 함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 2) 위 1)에 의한 자기부담금에 따른 할인을 적용은 당해 보험계약목적물의 공사유형(표준자기부담금 “가” 또는 “나” 중 하나), 예상되는 사고 원인(자연재해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 적용
- 3) 표준자기부담금

○건설공사 및 제3자 배상책임의 사고원인별 표준자기부담금

사고원인별 보험가입 금액	표준자기부담금 “가” 해당공사			표준자기부담금 “나” 해당공사		
	건설공사(계약목적물)		제3자배 상책임	건설공사(계약목적물)		제3자배 상책임
	유지보수, 시운전, 자연재해	기타		유지보수, 시운전, 자연재해	기타	
1억원까지	40만원	10만원	10만원	1백만원	25만원	25만원
5억원까지	1백만원	25만원	25만원	2백만원	50만원	50만원
20억원까지	2백만원	50만원	50만원	4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80억원까지	4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8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80억원초과	8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16백만원	4백만원	4백만원

주) 공사위치가 자연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공사는 자연재해 부담금 적용

4) 자기부담금에 따른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의 할인을

○ 우리청 기준 자기부담금(1억원)과 사고원인별 표준자기부담금의

증액배수에 따른 할인율은 아래기준을 적용

자기부담금 증액 배수	할인율	자기부담금 증액 배수	할인율
1배	0.0%	10배	20.0%
2배	7.5%	20배	26.0%
3배	10.0%	30배	30.0%
4배	12.5%	40배이상	32.0%
5배	15.0%		

5) 자기부담금에 따른 할인율 계산 사례

○ 보험가입금액 80억원이 초과할 경우

사고원인별 구 분		표준자기부담금 “가” 해당공사			표준자기부담금 “나” 해당공사		
		건설공사(계약목적물)		제3자 배상책임	건설공사(계약목적물)		제3자 배상책임
		유지보수, 시운전, 자연재해	기타		유지보수, 시운전, 자연재해	기타	
표준 자기부담금(A)		8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16백만원	4백만원	4백만원
우리청 자기부담금(B)		10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사고원인별 부담비(B/A)		12.5배	50배	50배	6.25배	25배	25배
사고원인별요율할인율(%)		21.5%	32%	32%	16.25%	28%	28%
평균 할인율적용	자연재해 예상공사	$(21.5\%+32\%)/2=26.75\%$		32%	$(16.25\%+28\%)/2=22.125\%$		28%
	기타공사	$(32\%+32\%)/2=32\%$			$(28\%+28\%)/2=28\%$		

- 표준자기부담금 “가” 해당공사 : 주거·업무용건물, 극장, 연주장, 철도역, 공항 등  
(공사물건별 표준 자기부담금의 “가”에 해당하는 공사를 적용)
  - 표준자기부담금 “나” 해당공사 : 체육관, 발전소, 활주로, 철도, 지하철, 터널, 지하도, 상하수도, 교량 등 (공사물건별 표준 자기부담금의 “가”에 해당하는 공사를 적용)
- ※ 자연재해 위험 : 지진, 화산, 해일, 태풍, 폭풍우, 홍수, 범람, (산)사태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공사
- ※ 평균할인율은 당해공사의 공사여건에 따라 자연재해 예상공사, 기타공사중 선택적용

라. 고액물건 할인

당해 보험계약목적의 보험가입금액이 5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

보험가입금액	할인율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기준요율의 4%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기준요율의 6%
200억원 이상 ~ 400억원 미만	기준요율의 8%
40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기준요율의 10%
800억원 이상	기준요율의 12%

마. 제3자 배상책임 할증율

- 1) 아래 요율표에 따라 산정된 배상책임담보 할증율을 재물손해 기본 요율(보험기간이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후의 기본 요율)에 적용하여 제3자 배상책임요율을 산정
- 2) 제3자 배상책임요율 산정

구 분	배상책임보상한도액 (대인·대물 일괄/사고당)	재물손해 기본요율(평균요율)에 대한 할증(%)
1그룹 (-15%)	5억원 미만	31 + 17×보상한도액÷5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8×보상한도액÷5억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8 + 34×보상한도액÷20억원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95 + 34×보상한도액÷40억원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112 + 34×보상한도액÷80억원
	8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119 + 34×보상한도액÷100억원
2그룹 (0%)	5억원미만	36 + 20×보상한도액÷5억원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56×보상한도액÷5억원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92 + 40×보상한도액÷20억원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112 + 40×보상한도액÷40억원
	40억원이상 80억원미만	132 + 40×보상한도액÷80억원
	80억원이상 100억원이하	140 + 40×보상한도액÷100억원
3그룹 (+30%)	5억원미만	47 + 26×보상한도액÷5억원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73×보상한도액÷5억원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20 + 52×보상한도액÷20억원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146 + 52×보상한도액÷40억원
	40억원이상 80억원미만	172 + 52×보상한도액÷80억원
	80억원이상 100억원이하	182 + 52×보상한도액÷100억원

< 공사·물건별 요율그룹 >

구 분	건설공사 물건
1그룹	3. 산업용 건물 4. 탑/싸일로 6. 수리구조물/댐/사이펀/간척공사 등 8. 특수구조물/교량 9. 하수도/배관/하수처리시설 등
2그룹	2. 업무용 및 공공건물 5. 토공/도로/활주로/철도
3그룹	1. 주거용 건물 7. 갯도/터널/수갱

※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적용은 당해 보험가입금액의 1/100이상과 5억원중 많은 금액기준으로 적용

바. 도심지공사의 특별약관에 따른 요율 산정(영국식약관 경우)

- 영국식약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독일식약관에 진동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과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할 경우의 요율을 추가로 적용

1) 설계결함 담보 특별약관

- 보험목적물 기본요율에 아래의 설계결함 담보 할증계수를 곱하여 산정

공사형태	할증계수(%)
1. 건물공사(코드번호 :1000~3999)	10
2. 탑, 사일로, 탱크 등(코드번호 : 4000~4999)	20
3. 토공, 도로, 활주로, 철도 등(코드번호 : 5000~5999)	10
4. 갯도, 터널, 수갱, 지하철, 지하도 등(코드번호 : 7000~7999)	15
5. 교량, 옹벽, 등(코드번호 : 8000~8999)	20
6. 하수도, 배관, 하수처리시설 등(코드번호 : 9000~9399)	10
7. 저수지 등(코드번호 : 9400~9599)	12.5

2)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된 할증율을 제3자 배상책임요율에 적용하여 산정

○ 할증율은 최소 100%에서 최대 400%로 함 (단, 다음의 할인요소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100%내에서 할인 가능하며, 그때의 할증율 범위는 최소 50%에서 최대 300%로 한다)

- 할증율 = (굴토깊이 ÷ 굴토선으로부터 최단거리<sup>(주)</sup>) × 100% (- 할인요소)

- 요율계산식 : 배상책임요율(재물손해기본요율 \* 보상한도액별할증계수) \* (1 + a)

『a는 할인 할증율이며 상기 할증율이 100%일 경우 a = 1』

주) 굴토선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제3자 소유의 시설물까지의 최단거리

○ 할인요소(다음 할인 요소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100%할인)

- 공사구역에 인접건물의 인접면이 전체공사구역의 1/4 이하일 경우

- 교량

- 공사부지가 10,000m<sup>2</sup> 이상인 아파트

#### 사. 표준요율의 수정

1) 본 기준의 “가” 또는 “나”의 기본요율에 각 할인(증)율을 곱하여 표준요율을 산정한다.

○ 당해 보험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담보에 필요한 공사보험의 표준요율은 “가” 또는 “나”의 기본요율에 자기부담금 할인율, 고액할인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단, 영국식약관을 사용할 경우는 설계결합담보의 특약에 따른 할증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산식 = 기본요율 × (1 + 공사기간에 따른 할증) × (1 - 자기부담금에 따른 할인율) × (1 - 고액할인율)

○ 당해 보험계약목적물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 담보보험 표준요율은 “가” 또는 “나”의 기본요율에 제3자 배상책임 할증율과 자기부담금 할인율, 고액할인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단, 영국식약관을 사용할 경우는 진동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약에 따른 할증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산식 = 기본요율 × (1 + 공사기간에 따른 할증) × 제3자 배상책임할증율 × (1 - 자기

부담금에 따른 할인율) × (1 - 고액할인율)

아. 최종 적용요율 적용

1) 최종 적용요율은 위 “사”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표준요율과 제3자 배상책임 표준요율에 50%의 특별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

\* 계약금액(낙찰율 감안)을 기준으로 공사보험을 부보 하는 것과 손해율을 감안하여 할인율 50%를 적용

2) 최종 적용요율은 백분율(%) 단위로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넷째자리로 표시

[첨부1]

## 건설공사의 공사물건별 기본요율표

(보험개발원 재물보험 참조위험율 2009 4. )

### 1. 공사물건별 기본요율

#### 가. 요율표 목차

- 1000 주거용 건물
- 2100 업무용건물
- 2200 공공건물
- 3100 공장
- 3300 발전소
- 3500 지하충터파기공사
- 4100 탑
- 4200 사일로
- 4300 콘크리트탱크
- 5100 토공(Earthworks)
- 5200 도로, 포장공사
- 5300 철도공사
- 5400 활주로공사
- 6100 수리(水理) 구조물
- 6200 댐
- 6300 수리(水理) 구조물 전체
- 6500 사이펀
- 6600 간척공사
- 7100 지하굴착식갱도 및 터널
- 7200 개거식(開渠式) 갱도, 터널, 수갱
- 7300 조립식 터널
- 8100 방호구조물
- 8200 교량
- 9100 하수도와 배관
- 9200 하수 및 폐수처리 시설(지하배관은 제외)
- 9300 펌프장(기계설비 포함)
- 9400 저수지
- 9500 상수도 정수장, 배수지
- 9700 관개시설



나. 요율표

코드 번호	구조 및 시공내역(건설공사물건)	기본담보 요율(%)	표준자기 부담금(%)	표준담보 기간(월)	첨부 특약
1000	주거용 건물				
1010	지하층이 없는 지상 2층까지의 주택 (경량골조, 목조 등)	0.067	가	9	
1011	지하층이 없는 지상 2층까지의 주택 (석조, 벽돌조 등)	0.054	가	9	
1110	지하1층, 지상 5층까지의 주택 - 6층이상 10층까지 매 층당 - 11층이상 15층까지 매 층당 - 16층이상 25층까지 매 층당	0.050 0.0021 0.0013 0.0007	가 가 가 가	15 (주) (주) (주)	26 21,26 21,26 21,26
1111	지하 2~3층, 지상 5층까지의 주택 - 6층이상 10층까지 매 층당 - 11층이상 15층까지 매 층당 - 16층이상 25층까지 매 층당 - 26층이상 42층까지 매 층당  (주) 전항 표준담보기간에 매층당 1개월씩 추가한 기간으로 표준담보 기간을 정함  ※ 지하층수가 4층 이상인 경우는 ("코드번호 2120")참조	0.058 0.0021 0.0013 0.0007 0.0007	가 가 가 가 가	18 (주) (주) (주) (주)	26 21,26 21,26 21,26 21,26
2000	업무용 건물 및 공공 건물				
2100	업무용 건물				
2110	지하가 없거나 지하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물  - 6층이상 10층까지 매 층당 - 11층이상 15층까지 매 층당 - 16층이상 25층까지 매 층당	0.050 0.0020 0.0014 0.0014	가 가 가 가	15 (주) (주) (주)	26 21,26 21,26 21,26
2111	지하 2~3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물  - 6층이상 10층까지 매 층당 - 11층이상 15층까지 매 층당 - 16층이상 25층까지 매 층당 - 26층이상 42층까지 매 층당 (주) 전항 표준담보기간에 매층당 1개월씩 추가한 기간으로 표준 담보기간을 정함	0.054 0.0020 0.0014 0.0014 0.0006	가 가 가 가 가	18 (주) (주) (주) (주)	26 21,26 21,26 21,26 21,26

코드 번호	구조 및 시공내역(건설공사물건)	기본담보 요율(%)	표준자기 부담금(%)	표준담보 기간(월)	첨부 특약
	※ 지하층수가 4층 이상인 경우는 "코드번호 2120" 참조				
2120	지하층이 4개층 이상인 건물  - 지하층 매 층당 ○ 일반시공 ○ Diaphragm Wall ○ Top-Down	0.011 0.006 0.005		2 3 3	21,26 21,26 21,26
	※ 적용물건 (코드번호 1111, 2111, 2271 등)				
2130	지하 2층까지의 지하차고 지하 3층까지의 지하차고 지하 4층까지의 지하차고 지하 5층까지의 지하차고	0.068 0.082 0.100 0.132	가 가 가 가	18 22 26 30	21,26 21,26 21,26 21,26
	※ 지하층 터파기공사만을 부보할 경우에는 (코드번호"3500")적용				
2200	공공건물				
2210	극장, 연주회장, 전시장, 집회장  - 폭(span) 30 m 이하 - 폭(span) 40 m 이하 - 폭(span) 40 m 초과	0.135 0.142 0.151	가 가 가	24 30 36	21,26 21,26 21,26
2240	체육관  - 폭(span) 30 m 이하 - 폭(span) 40 m 이하 - 폭(span) 40 m 초과	0.122 0.149 0.191	나 나 나	24 30 36	21,26 21,26 21,26
2250	실내수영장  - 폭(span) 30 m 이하 - 폭(span) 40 m 이하 - 폭(span) 40 m 초과	0.151 0.182 0.231	나 나 나	24 30 36	26 21,26 21,26
2260	옥외경기장  - 지붕이 객석의 50%미만을 덮는 경우 - 지붕이 객석의 50%이상을 덮는 경우	0.141 0.280	나 나	24 36	26 26
2270	지하 1층의 철도역, 공항  ┌ 격납고는 (코드번호 "2280") 참조	0.161	가	24	21,26

코드 번호	구조 및 시공내역(건설공사물건)	기본담보 요율(%)	표준자기 부담금(%)	표준담보 기간(월)	첨부 특약
2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활주로, 활주로는 (코드번호 "5400") 참조</li> </ul> 지하 2~3층의 철도역, 공항	0.190	가	36	21,26
2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납고는 (코드번호 "2280") 참조</li> <li>└ 가설활주로, 활주로는 (코드번호 "5400") 참조</li> <li>※ 지하국도는(코드번호"7000") 참조</li> <li>※ 지하층수가 4층 이상인 경우는 (코드번호 "2120" 참조</li> </ul> 격납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span) 30 m 이하</li> <li>- 폭(span) 40 m 이하</li> <li>- 폭(span) 40 m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건물 (코드번호 "2270", "2271" 참조</li> <li>└ 가설활주로, 활주로 (코드번호 "5400" 참조</li> </ul>	0.179 0.189 0.246	나 나 나	24 30 36	21,26 21,26 21,26
3000	산업용 건물				
3100	공장				
3110	공장구내 건물을 일괄하여 계약할 경우(생산동 건축공사가 포함될 경우에 한함)  ※ 단, 아파트형 공장, 공장구내 건물 등이 5층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용건물 "코드번호 2100"」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0.084	가	36	21,26
3120	생산동, 창고, 지원설비동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span) 30 m 이하</li> <li>- 폭(span) 40 m 이하</li> <li>- 폭(span) 40 m 초과</li> </ul>	0.084 0.090 0.096	가 가 가	24 30 36	21,26 21,26 21,26
3130	기숙사, 식당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용건물 요율 준용 (코드번호 : 1000 )</li> </ul>				
3140	사무실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층건물 요율 준용 (코드번호 : 2100 )</li> </ul>				

코드 번호	구조 및 시공내역(건설공사물건)	기본담보 요율(%)	표준자기 부담금(%)	표준담보 기간(월)	첨부 특약
3150	체육관, 강당, 전시장 등 - 체육관 요율 준용 (코드번호 : 2240 )				
3160	탑, 사일로, 기타 구축물 - 탑, 사일로 요율 준용 (코드번호 : 4000 )				
3300	발전소				
3310	화력발전소	0.228	나	24	21
3320	원자력발전소	0.328	나	36	21
3330	열병합발전소	0.228	나	24	21
3340	중양열발전소	0.228	나	24	21
3350	디젤엔진발전소	0.157	나	24	21
3360	수력발전소 * (댐은 6000 참조)	0.296	나	24	21
3500	지하층 터파기 공사  (제반 가시설 공사비 포함) - 최대굴토 깊이 10m 이하 - 최대굴토 깊이 20m 이하 - 최대굴토 깊이 30m 이하 - 최대굴토 깊이 40m 이하 - 최대굴토 깊이 40m 초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요율을 수정할 수 있다.  ※ Diaphragm Wall 또는 Top-Down 방식이 사용될 경우  - 표준담보기간은 2배로 확장하여 적용  - Diaphragm Wall : 40% 까지 인하 가능 - Top-Down : 60%까지 인하 가능  ※ 지하수위가 최저굴착면보다 깊을 경우 : 10% 까지 인하 가능	0.483 0.645 0.805 0.886 개별요율	나 나 나 나	4 6 8 10	26 26 26 26

코드 번호	구조 및 시공내역(건설공사물건)	기본담보 요율(%)	표준자기 부담금(%)	표준담보 기간(월)	첨부 특약
3600	기존빌딩의 내부수리 및 외벽공사	개별요율			
4000	탑,싸일로				
4100	탑				
4110	급수탑 - 용량 500m <sup>3</sup> 이하 - 용량 500m <sup>3</sup> 초과	0.247 0.269	가 가	18 24	
4120	전파 송수신탑 - 높이 75m 이하 - 높이 75m 초과	0.323 0.355	나 나	24 24	21 21
4130	굴뚝 - 높이 100m 이하	0.323	나	24	21
4140	냉각탑 - 높이 100m 이하 - 높이 100m 초과	0.340 0.369	나 나	24 24	21 21
4200	사일로				
	- 높이 50m 이하 - 높이 50m 초과	0.194 0.253	나 나	24 24	21 21
4300	콘크리트 탱크				
4310	지상탱크	0.149	나	18	
4320	지하탱크	0.168	나	24	26
5000	토공, 도로, 활주로, 철도				
5100	토공 (Earthworks)				
5110	평지에서의 정지작업에 수반되는 굴토, 매립, 평탄작업(지하층 굴토 공사는 코드번호 "3500" 참조)	0.173	나	12	26,27
5115	경사지에서의 정지작업에 수반되는 굴토, 절토, 매립, 성토, 평탄작업 (지하층 굴토공사는 코드번호 "3500" 참조)	0.260	나	24	23,26, 27,30, 35
	※ 정지대상부지의 가장 높은 지점과				

코드 번호	구조 및 시공내역(건설공사물건)	기본담보 요율(%)	표준자기 부담금(%)	표준담보 기간(월)	첨부 특약
	낮은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도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코드번호 5110"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5120	배수로공사(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코드번호 "9100 " 참조)	0.304	나	24	26,27, 32
5200	도로공사 및 포장공사  ※ 터널,교량(40m초과),고가도로 (40m초과), 지하차도는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5210	- 시가(市街)지 도로	0.099	나	24	26,32
5220	-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0.121	나	36	19,26, 27,29,31
5300	철도공사  ※ 터널,교량(40m초과),고가도로 (40m초과), 지하차도는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0.133	나	36	19,26, 27,29,31
5400	활주로 공사  가설활주로,활주로,공항내 도로 등  ※ 건물 및 구조물은 별도요율 적용 "코드번호 2270, 2271" 참조	0.155	나	30	
6000	수리(水理)구조물, 댐, 수리구조 물 전체, 사이편, 간척공사				
6100	수리(水理)구조물				
6110	하천공사	개별요율			
6120	항해 가능한 운하  *(관개용 운하, 하수처리수로 는 코드번호 9000 참조)	개별요율			
6130	둑(제방) 피복석(사방석) 공사	개별요율			
6140	위어(둑, 어살 : weirs)	개별요율			

코드 번호	구조 및 시공내역(건설공사물건)	기본담보 요율(%)	표준자기 부담금(%)	표준담보 기간(월)	첨부 특약
6150	수문	개별요율			
6160	내륙의 항만공사	개별요율			
6170	해안의 항만공사	개별요율			
6175	방파제	개별요율			
6177	Jetties, Terminals	개별요율			
6180	건선거 (乾船渠, Dry Dock)	개별요율			
6190	제방	개별요율			
6200	댐				
6210	흙댐	개별요율			
6220	콘크리트댐	개별요율			
6221	중력식 콘크리트댐	개별요율			
6222	버팀대식 콘크리트댐	개별요율			
6223	아치형 콘크리트댐	개별요율			
6300	수리(水理) 구조물 전체	개별요율			
6500	사이편	개별요율			
6600	간척공사	개별요율			
7000	갱도, 터널, 수갱(豎坑)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상하수 도, 지하도, 지하상가, 터널등)				
7100	지하 굴착식 갱도 및 터널				
7110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보도용  ※ 지하철 역사를 포함할 경우 - 1개 역사당 5% 할증  ※ 지하철 역사만을 부보할 경우 - 20% 할증	0.249	나	48	25,26,27, 30,31,32

코드 번호	구조 및 시공내역(건설공사물건)	기본담보 요율(%)	표준자기 부담금(%)	표준담보 기간(월)	첨부 특약
7120	도로, 철로용	0.211	나	48	25,26,27, 30,31,32
7130	전력구, 통신구, 상하수도, 도수로용	0.173	나	48	25,26,27, 30,31,32
7200	개거식(開渠式) 갯도, 터널, 수갱				
7210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보도용 ※ 지하철 역사를 포함할 경우 - 1개 역사당 5% 할증  ※ 지하철 역사만을 부분할 경우 - 20% 할증	0.246	나	48	25,26,27, 30,31,32
7220	도로, 철로용	0.222	나	48	25,26,27, 30,31,32
7230	전력구, 통신구, 상하수도, 도수로용	0.173	나	48	25,26,27, 30,31,32
7300	조립식터널	개별요율			
8000	특수구조물, 교량				
8100	방호구조물				
8110	옹벽	0.322	나	18	19,31, 35
8120	낙설, 낙석방지용 구조물	0.352	나	18	19,31, 35
8200	교량				
8210	일반교량(Beam Bridge, Girder Bridge) - 교각간 거리 40m 이하 - 교각간 거리 40m 초과  ※ 항시 물이 흐르는 강이나 호수를 건너는 교량공사는 위 요율을 10% 할증하여 적용한다.  ※ 만이나 바다를 건너는 교량공사는 위 요율을 20% 할증하여 적용한다.	0.321 0.391	나 나	30 36	19,30,35 19,30,35
8220	아치형교량 - 폭(span) 40m 이하 - 폭(span) 40m 초과  ※ 항시 물이 흐르는 강이나 호수를 건너는 교량공사는 위 요율을 10% 할증하여 적용한다.	0.385 0.471	나 나	30 36	19,30,35 19,30,35



코드 번호	구조 및 시공내역(건설공사물건)	기본담보 요율(%)	표준자기 부담금(%)	표준담보 기간(월)	첨부 특약
	※ 만이나 바다를 건너는 교량공사는 위 요율을 20%할증하여 적용한다.				
8230	현수교	개별요율			
8240	사장교	개별요율			
8250	부교	개별요율			
8260	고가도로	0.270	나	24	19
코드 번호	구조 및 시공내역(건설공사물건)	기본담보 요율(%)	표준자기 부담금(%)	표준담보 기간(월)	첨부 특약
9000	하수도, 배관, 하수처리시설, 펌프 장치, 저수지, 수처리시설, 관개시설				
9100	하수도와 배관				
9110	하수도시설 - 깊이 5m 이하 굴착시 - 깊이 5m 초과 굴착시	0.183 0.203	나 나	18 24	26,27 26,27
9120	지하배관(가스, 물, 기름운반용) - 깊이 5m까지 굴착시 - 깊이 5m초과 굴착시	0.170 0.187	나 나	18 24	26,27,32 19,26, 27,32
9200	하수, 폐수처리시설(지하배관은 제외)	0.305	나	24	
9300	펌프장(기계설비 포함)	0.165	나	24	
9400	저수지				
9410	저수지(독만 쌓아서 만들 경우) - 최대 담수량 1,000m <sup>3</sup> 이하 - 최대 담수량 1,000m <sup>3</sup> 초과	0.156 0.172	나 나	12 24	
9420	저수지(땅을 파서 만들 경우) - 최대 담수량 1,000m <sup>3</sup> 이하 - 최대 담수량 1,000m <sup>3</sup> 초과	0.179 0.198	나 나	12 24	
9500	상수도 정수장, 배수지	0.238	나	24	
9700	관개시설  * (사이펀은 6500 참조)	개별요율			

[첨부2]

건설공사의 제3자 배상책임 요율표

(보험개발원 재물보험 참조위험율. 2008.4)

- 1) 아래의 요율표에 따라 산정된 배상책임담보 할증율을 재물손해 기본요율 (보험기간이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후 요율)에 적용하여 제3자 배상책임요율을 산정한다.
- 2) 보험증권별로 한사고당 배상책임 보상한도액은 공사목적물 보험가입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3) 요율

구 분	배상책임보상한도액 (대인·대물 일괄/사고당)	재물손해 기본요율(평균요율)에 대한 할증(%)
1그룹 (-15%)	5억원 미만	31 + 17×보상한도액÷5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8×보상한도액÷5억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8 + 34×보상한도액÷20억원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95 + 34×보상한도액÷40억원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112 + 34×보상한도액÷80억원
	8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119 + 34×보상한도액÷100억원
2그룹 (0%)	5억원미만	36 + 20×보상한도액÷5억원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56×보상한도액÷5억원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92 + 40×보상한도액÷20억원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112 + 40×보상한도액÷40억원
	40억원이상 80억원미만	132 + 40×보상한도액÷80억원
	80억원이상 100억원이하	140 + 40×보상한도액÷100억원
3그룹 (+30%)	5억원미만	47 + 26×보상한도액÷5억원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73×보상한도액÷5억원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20 + 52×보상한도액÷20억원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146 + 52×보상한도액÷40억원
	40억원이상 80억원미만	172 + 52×보상한도액÷80억원
	80억원이상 100억원이하	182 + 52×보상한도액÷100억원

< 공사·물건별 요율그룹 >

구 분	건설공사 물건
1그룹	3.산업용 건물 4.탑/싸일로 6.수리구조물/댐/사이펀/간척공사 등 8.특수구조물/교량 9.하수도/배관/하수처리시설 등
2그룹	2.업무용 및 공공건물 5.토공/도로/활주로/철도
3그룹	1.주거용건물 7.갱도/터널/수갱

4)자기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II. 요율규정 9. 자기부담금에 따른다.

[첨부3]

##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방법(예시)

('09. 4. 요율, 적용기준 : 독일식 약관, 일반공사에 적용)

● 공사명 :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 관리번호 :

● 보험가입 조건

- 보험가입금액 : 20,346,000,000(교량)
- 공사에정기간 : 60개월(교량)
- 표준담보기간 : 36개월
- 제3자 배상책임 한도액 : 보험가입금액의 1/100이상과 5억원중 많은 금액

● 보험요율 산식

구 분	기본요율(A) (%)	기본요율수정 (B)(%)	자기부담금 할인(%)	고액할인 (%)	범위할인 (%)	적용요율 (%)
보험 목적물	*1 0.391×1.1=0.4301	*2 0.54479	*3 22.125	*4 8	0	0.39031
제3자 배상책임		*5 기본요율수정×할증율	28			0.17321

※ 기본요율(A)는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서의 기본요율이며, 기본요율 수정(B)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기본요율(A)을 수정한 기본요율임

\*1 : 공사물건별 기본요율표의 교량요율중 “일반교량 중 교각간 거리 40m초과” 요율에 10%할증(항시 물이 흐르는 강을 건너는 교량) : 기본요율 0.391%, 할증 10%

\*2 : 공사물건별 기본요율표의 교량요율에 해당하는 당해공사 표준담보기간 36개월, 본 공사기간 60개월을 적용하여 기본요율을 수정한다. →공사보험산출요령 3항 나 참조

$$0.4301 \times \{1 + (12/36) \times 50\% + (12/36) \times 30\% + (0/36) \times 20\% \} = 0.54479$$

\*3 : 자기부담금 할인율(자연재해 예상공사) : 22.125% →공사보험산출요령 3항 다 참조

: 제3자 배상 할인율(자연재해 예상공사) : 28% →공사보험산출요령 3항 다 참조

\*4 : 고액 할인율 : 보험가입금액 200억 이상시 8%

\*5 : 제3자 배상책임 할증율 : 48 × 보상한도액 (5억)/5억 = 48%

▶ 보험목적물 적용요율 :  $0.54479 \times 0.77875 \times 0.92 = 0.39031$

▶ 제3자배상 적용요율 :  $0.54479 \times 0.48 \times 0.72 \times 0.92 = 0.17321$

◎ 적용보험요율 : 0.2818%

→  $(0.39031\% + 0.17321\%) \times 0.5 = 0.28176\%$  (소수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첨부4]

##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방법(예시)

(09. 4. 요율, 적용기준 : 영국식약관, 도심지공사의 특별약관)

● 공사명 :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 관리번호 :

● 보험가입 조건

- 보험가입금액 : 20,346,000,000
- 공사기간 : 60개월                      - 표준담보기간 : 36개월
- 제3자 배상책임 한도액 : 보험가입금액의 1/100이상과 5억원중 많은 금액

● 보험요율 산식

구 분	기본요율 (A)(%)	기본요율수정 (B)(%)	자기부담금 할인(%)	고액할인 (%)	설계결합담 보 할증(%)	진동지지대 철거 및 약화 할증(%)	적용요율 (%)
보험 목적물	*1 0.391×1.1=0.4301	*2 0.54479	*3 22.125	*4	*6 교량 : 20		0.46837
제3자 배상책임		*5 기본요율수정×할증율	28	8		*7 175	0.47634

※ 기본요율(A)는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서의 기본요율이며, 기본요율 수정(B)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기본요율(A)을 수정한 기본요율임

\*1 : 공사물건별 기본요율표의 교량요율 중 “일반교량중 교각간 거리 40m초과” 요율에 10%할증(항시 물이 흐르는 강을 건너는 교량) : 기본요율 0.507%, 할증 10%

\*2 : 공사물건별 기본요율표의 교량요율에 해당하는 당해공사 표준담보기간 36개월, 본 공사기간 60개월을 적용하여 기본요율을 수정한다. →공사보험산출요령 3항 나 참조

$$0.4301 \times \{1 + (12/36) \times 50\% + (12/36) \times 30\% + (0/36) \times 20\% \} = 0.54479$$

\*3 : 자기부담금 할인율(자연재해 예상공사) : 22.125% →공사보험산출요령 3항 다 참조

: 제3자 배상 할인율(자연재해 예상공사) : 28% →공사보험산출요령 3항 다 참조

\*4 : 고액 할인율 : 보험가입금액 200억 이상시 8%

\*5 : 제3자 배상책임 할증율 : 48 × 보상한도액 (5억)/5억 = 48%

\*6 : 설계결합담보 할증율 : 교량공사 20% ⇒ 재물손해 기본요율에 가산

\*7 : 진동지지대 철거 및 약화 할증율 : 100%할인시 평균 175% ⇒ 제3자배상책임요율에 가산

▶ 보험목적물 적용요율 :  $0.54479 \times 0.77875 \times 0.92 \times 1.2 = 0.46837$

▶ 제3자배상 적용요율 :  $0.54479 \times 0.48 \times 0.72 \times 0.92 \times 2.75 = 0.47634$

◎ 적용보험요율 : 0.4724%

→  $(0.46837\% + 0.47634\%) \times 0.5 = 0.47235\%$  (소수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